

# 뉴저지 주 근로자 권리:

## 고용인의 임금 및 근로 시간 규정 위반에 관한 불만 사항의 신고 및 접수

접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안내

[myworkrights.nj.gov](http://myworkrights.nj.gov)



### 뉴저지 주 노동국의 조사 내용

- 임금 착취 및 체불; 최저 시급 및 초과 수당 지급 위반 여부
- 법정 유급 병가 지급 위반 여부
- 근로자에 대한 보복 행위
- 근로자의 고용 지위 구분의 오류 여부
- 적정 (평균) 시급 지급 위반 내역 (공공 시설 시공 및 건설)
  - 국내 근로자
  - 서비스 팁 근로자
  - 농업 근로자
  - 미성년 근로자
  - 임시 근로자

### 불만 사항 신고 및 접수 이후 진행 절차

1. 온라인 접수 시 10일 이내에 등록하신 이메일 주소로 접수 번호가 발송 됩니다. 문서 접수 시에는 접수번호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2. 접수된 불만 사항은 담당 조사관에게 전달 되며 이후 우편 회신 또는 노동국 담당자와의 면담 방식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에 대한 회수 조치가 시작 됩니다 (해당 타 공공기관으로 이전 될 수도 있습니다) 접수된 불만사항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그 미 인정 사유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3. 접수된 불만 사항의 진행 내역을 확인 하시려면 [wagehour.nj.gov](http://wagehour.nj.gov) 로 방문하시어 접수번호로 조회 하시면 됩니다. (조회 가능 상태까지 최장 30일 소요)
4. 조사 과정에서 고용인에게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으로 근로자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노동국에서는 (매우 제한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접수된 불만 사항을 해당 고용인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안내 책자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5. 조사 결과의 통보까지 수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등 고용인의 불공정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고용인은 근로자에게 직접 또는 노동국을 통하여 배상하게 됩니다 (다만, 배상이 항상 보장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노동국 에서 근로자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접수된 불만 사항을 기각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근로자는 재심사를 위한 청원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nj.gov/labor/wageappeal](http://nj.gov/labor/wageappeal). 참조)

불만 사항 서면 접수 방법에 대한 안내를 원하시거나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 (609) 292-2305 또는 이메일 [wage.hour@dol.nj.gov](mailto:wage.hour@dol.nj.gov)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국어가 영어가 아닐 경우 통역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nj.gov/labor/investigate](http://nj.gov/labor/investigate) 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인 신분 공개 제한, 예외의 경우, 불만 사항 익명 접수 방법

뉴저지 노동국 (NJDOL)은 민원인의 신분 (합법적인 이민자 또는 시민권자 여부)을 묻지 않으며, 신분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업무를 처리 합니다. 또한 (법에 저촉되지 않은 한) 연방 이민국의 조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신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민원인의 신분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예) 판사의 판결, 행정 기관의 결정, 관련 법 집행 등. 이 경우 담당 집행관은 정보 공개 동의서를 민원인으로부터 확인 받고 민원인의 신분 정보에 관한 익명성을 보장할 것을 인증해야 합니다. 민원인이 노동국 이외의 다른 정부 기관에 불만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민원인의 신분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불만 사항을 익명으로 접수하기 원하시는 경우 신청 양식의 신청인 성명란에 "ANONYMOUS"라고 기재하시고 주소란은 공란으로 비우신 후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접수된 내역의 확인은 불가능 합니다.

## 고용인의 보복행위

불만 사항 접수의 대상인 고용인이 불만 사항을 접수한 근로자를 상대로 보복행위를 할 경우 고용인은 관련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myworkrights.nj.gov. 참조)

## 불만 사항 접수 방법 안내

온라인: [myworkrights.nj.gov](http://myworkrights.nj.gov)

우편:

New Jersey Department of Labor and Workforce Development  
Division of Wage and Hour Compliance, P.O. Box 389, Trenton, NJ 08625-0389

팩스: (609) 695-1174

신청서 출력: [nj.gov/labor/file](http://nj.gov/labor/file)

스캔



NJ.GOV/LABOR  
MYWORKRIGHTS.NJ.GOV